

「산림보호법」 제31조 제3항에 따라 **2023년 봄철 「산불조심기간」**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5일  
산 림 청 장

### 2023년 봄철 「산불조심기간」 설정·운영

#### 1. 봄철 「산불조심기간」 설정

○ 산불조심기간 : 2023. 2. 1. ~ 5. 15(104일)

\*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·운영

#### 2. 산불 신고 요령

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신고 요령 :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, 산불의 크기, 신고자 인적 사항(이름, 연락처)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

#### 나. 신고할 행정기관

1) 시청 · 군청 · 구청(읍 · 면 · 동사무소)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

○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(산림청) : 042-481-4119

2) 소방관서(119), 경찰관서, 군부대 등

3)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

\* 기타 '스마트 산림재해' 앱의 '산불신고'를 통해서도 가능

#### 3. 당부사항

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.

첫째,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·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둘째,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([www.forest.go.kr](http://www.forest.go.kr)) 또는 인터넷 포털(네이버)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셋째,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,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넷째,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.

\*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: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
아울러,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.